

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—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년 9월 18일
- 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18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25, 26일
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,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김 자 원

나. 제안이유

- 제4공단에 편입된 양포동사무소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
- 사적 제336호인 낙산리 고분군 보존관리계획 사업 예정부지 매입
-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인접 사유지와 상용한 사유지 교환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 및 처분재산】

(단위:천원)

구분	위 치	필적수	면적(m ²)	추정가액	사 유
토지매입	4공 단 내	1	2,361(714평)	344,000	양포동 동사무소매입
건물신축	"	1동 (지하1층2)	연건평 990 (300평)	1,600,000	양포동사무소 신축
토지매입	해평 낙산리	5	4,536(1,372평)	43,456	고분군 보존사업예정부지
토지매입	원 평동	1	1,178(356평)	41,936	노인 복지회관부지 취득(교환취득)
토지매각	원 평동	2	787(238평)	47,455	매각(교환매각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시행령 제84조, 제101조
- 구 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취득처분의 경우 1억이상 토지의 면적은 1천㎡이상으로 하고 있음.
-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4공 단 편입 양포동사무소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계획, 해평 낙산리 고분군 보존관리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, 원평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인접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임.
- 다만, 재정법 시행령에서 교환에 대해서는 공용,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